제3장 법정 경연

3.1. 통칙

3.1.1. 경연 장소

변론기일의 경연은 대회장이 지정하는 법정에서 진행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 외에서 진행할 수 있다.

3.1.2. 경연 시간

변론기일의 경연은 본선은 45분간, 결선은 60분간 각 진행한다. 다만 집행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3.1.3. 경연 방법

1) 변론은 쟁점 정리 ⇒ 주 변론 ⇒ 재 변론 ⇒ 종합 변론 순으로 진행한다.

2) 각각의 변론은 팀당 최대 1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3) 주 변론은 3분 이상 하여야 하며, 본선의 경우에는 2명이 나누어 변론하여야 하고 결선의 경우에는 추가 쟁점을 포함하여 3명이 나누어 변론하여야 한다. 이 때 1명의 변론자가 자신의 변론을 마치면 그 변론자는 당해 변론(주변론)에서 재차 변론할 수 없다.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재차 변론할 수 있다.

4) 재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추가 재 변론을 할 수 있다.

5) 본선에서는 주 변론을 한 사람은 종합 변론에서 변론할 수 없다.

6) 양 팀은 변론 중 수시로 재판부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고, 한 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. 질의 및 답변 시간은 각 팀에 주어진 위 변론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7) 재판부는 변론자가 주어진 변론 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알리고 1분 이내에 종료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.

8) 변론자가 위 7)에 따른 촉구를 받았음에도 1분을 초과한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.

9) 참가 팀은 변론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.

10) 참가 팀은 변론 시 법정에 설치된 실물화상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.

3.1.4. 일방적 절차 진행

1) 한 팀이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10분을 기다린 후 출석한 팀에게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을 허가한다.

2) 경연 진출 팀의 출전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에 따라 대체 경연 진출 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1)과 동일하다. 다만, 이 경우 재판부는 개정 직후 출석한 팀에게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.

3) 위 1), 2)항의 경우, 재판부는 출석한 팀을 평가함에 있어 출석하지 않은 팀이 출석하여 변론한 것으로 가정하되, 상대 팀이 출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한다.

3.1.5. 경연장소에서의 의사소통

1) 경연 팀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은 경연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) 재판부 및 경연 팀과 방청인 사이에서는 구두, 서면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.

3.1.6. 경연의 공개

경연은 공개한다. 다만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공개 대상·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
3.1.7. 경연장소에서의 질서 유지 등

1) 경연장소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한다.

2) 경연장소에서의 촬영, 녹화·녹음, 방송 등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. 이 때 촬영, 녹화·녹음·방송 행위로 경연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)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앞서 진행되는 경연을 방청하거나 위 2)의 촬영, 녹화·녹음, 중계 결과물을 보거나 들어서는 아니 된다.

4) 경연 팀은 경연장소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재학 로스쿨,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이름표, 옷, 책자, 파일, 언행 등의 징표를 드러내어서는 아니 된다. 이는 경연장소에 있는 방청인에게도 적용된다.

5) 참가자, 방청인은 경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6) 재판장은 위 4), 5)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3.1.8. 경연의 공정성 확보

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팀에게 앞서 진행되는 경연에 관한 정보

가 수집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참가 팀의 동시 집합
2.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팀에 대한 일정 장소에서의 대기 및 외부와의 연락 제한
3.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의 휴대폰 등 통신수단의 보관

3.1.9. 원격영상재판

1) 본선 및 결선 경연은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
2)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경연을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, 본선 문제 게시와 함께 원격영상재판의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공고한다.

3.2. 본선

3.2.1. 본선의 진행

1) 경연 분야별 본선 진출 각 16개 팀을 4개 조로 편성한다.
2) 1개 조별 1개의 재판부를 배정한다. 다만,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1개의 재판부가 2개 이상의 조를 담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.

3.2.2. 문제 출제 및 서면 제출

1) 집행위원회는 본선 진출 팀 확정 공고 이후 본선문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2) 본선 경연 팀은 문제가 공지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(각 준비서면)을 모두, 형사의 경우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각 서면(검찰 측의 의견서, 피고인 측의 변론요지서)을 모두 집행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.
3) 집행위원회는 대진표 추첨 결과에 따라 경연 팀의 지위를 부여하고(원고·피고 또는 검찰 측·피고인 측), 경연 팀의 지위에 해당하는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측 경연 팀에 송부한다. 경연 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부여된 지위에 해당하는 화상자료(ppt)를 제출한다.
4) 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경연 팀에게 제출된 상대방 측의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3.2.3. 기일의 지정

변론기일의 경연은 각 경연 팀의 서면 교환이 종료된 후 진행한다.

3.2.4. 결선 진출 팀 확정

경연 분야별 각 조 1위 팀이 결선에 진출한다. 다만, 조 1위 팀의 대회 참가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조의 차순위 팀순으로 결선 진출 팀을 선정하되, 결선 경연의 정상적인 시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선 진출 팀 추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3.3. 결선

3.3.1. 결선의 진행

1) 경연 분야별 결선 진출 팀을 2개 조로 편성한다.

2) 경연 분야별로 1개의 재판부를 배정한다.

3.3.2. 문제 출제 및 변론 준비

1) 결선 문제는 본선 문제와 동일하다. 다만 집행위원회는 결선 진출 팀이 확정되면 각 결선의 경연 전(1시간 이내) 본선 문제에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다.

2) 결선 경연 팀은 결선 경연 전(1시간 이내) 진출 팀 대기실에서 변론 준비를 한다.

3.3.3. 순위 확정

우승팀, 준우승팀을 비롯한 1 ~ 4위의 순위는 경연 분야별로 결정한다.